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조정신청사건 접수 처리

제1절 개요

1. 조정과 중재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고, 당사자간의 감정의 악화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이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제도는 '정의와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중재'는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 및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중재부의 종국적인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05년도에는 중재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중재제도가 신청인들에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언론사와 중재신청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또한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재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선뜻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서울에 총 6개 중재부, 지방에 10개 중재부 등 총 16개 중재부를 두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중재위원 수가 증원됨에 따라 서울에 제6중재부가 증설되었다. 각 중재부에는 다년에 걸쳐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민사 분쟁사건을 처리하여 온 현직 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중재부장을 비롯,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언론사에 10년 이상 근무했던 언론인, 언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중재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때로는 직권 조정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사건 및 손해배상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면서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제2절 조정신청 청구현황

1. 연도별 조정신청현황

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총 883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004년의 조정신청현황과 비교하면 2005년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24건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매년 조정 청구건수가 점증하는 추세와 더불어, '정기간행물법'을 대신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해졌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던 것이 3개월로 늘어났고, 방문과 우편을 통한 서면신청방식에서 탈피해 구술신청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토록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최근 5년간 조정신청 현황

(2001. 1. 1. ~ 2005. 12. 31.)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청구건수	659	511	724	759	883
전년대비 증감		△148	213	35	124

2. 청구권별 조정신청현황

조정신청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531건(60.1%)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반론보도청구 194건(22.0%), 추후보도청구는 17건에 머물렀다. 새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는 141건(16.0%)으로, 언론중재법 시행 후 약 5개월 동안 접수된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상당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반론보도청구는 전년대비 107건이나 줄어들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2] 최근 5년간 청구권별 현황

(2001. 1. 1. ~ 2005. 12. 31.)

연도 청구명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정정	418 (63.4%)	307 (60.1%)	503 (69.5%)	414 (54.6%)	531 (60.1%)	2,173 (61.5%)
반론	221 (33.5%)	201 (39.3%)	216 (29.8%)	301 (39.7%)	194 (22.0%)	1,133 (32.0%)
추후	20 (3.0%)	3 (0.6%)	5 (0.7%)	44 (5.8%)	17 (1.9%)	89 (2.5%)
손배*					141 (16.0%)	141 (4.0%)
계	659 (100%)	511 (100%)	724 (100%)	759 (100%)	883 (100%)	3,536 (100.0%)

* 손해배상청구는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접수·처리

3. 매체 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매체 유형별로 청구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일간지, 방송, 주간지 순으로 조정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일간지가 492건(55.7%), 방송 151건(17.1%)건, 주간신문 113건(12.8%)이었으며, 새롭게 조정대상에 포함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48건(5.4%)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표 3] 매체유형별 현황

(2001. 1. 1. ~ 2005. 12. 31.)

연도 매체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일간지	416	303	485	449	492	2,145 (60.7)
주간신문	85	89	60	89	113	436 (12.3)
시사주간지	18	10	10	14	4	56 (1.6)
방송	105	89	121	161	151	627 (17.7)
케이블TV	9	1	12	15	23	60 (1.7)
월간지	16	14	22	18	33	103 (2.9)
통신	8	4	13	10	18	53 (1.5)
인터넷신문*					48	48 (1.4)
기타	2	1	1	3	1	8 (0.2)
계	659	511	724	759	883	3,536(100.0)

*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건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접수·처리

2005년에 특기할 사항은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도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 조정신청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의 제정 이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포되어 피해를 입어도,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민·형사 소송 외에는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언론 피해도 신속히 구제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 중에서 전파력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등이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은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제외된 점이다. 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에 청구된 476건 조정신청사건 중 인터넷신문에 대한 것이 48건(10.1%)으로 일간신문, 방송, 주간신문에 이어 4번째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터넷신문만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닷컴을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인터넷언론'을 개념화한다면 인터넷 관련 청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침해 유형별 조정신청현황

잘못된 보도로 인한 침해유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명예 및 사생활침해가 883건의 청구 중 845건(95.7%)으로 청구건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신용훼손은 36건(4.1%)으로 주로 개인 자영업자와 기업체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되었다.

[표 4] 침해유형별 현황

(2001. 1. 1. ~ 2005. 12. 31.)

연도 침해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명예 및 사생활침해	643	493	698	718	845	3,397(96.1)
신용훼손	9	10	10	39	36	104(2.9)
기타	7	8	16	2	2	35 (1.0)
계	659	511	724	759	883	3,536(100.0)

5. 신청인 유형별 조정신청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05년의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청구한 사건이 385건(43.6%)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146건(16.5%), 기업체 103건(11.7%), 조합 및 협회 87건(9.9%), 일반단체 58건

(6.6%),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31건(3.5%), 공공단체 22건(2.5%), 종교단체 19건(2.2%), 교육기관 12건(1.4%), 언론사 10건(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개인이 신청한 경우 그 직업을 살펴보면 개인사업가 61건(15.9%), 군인/경찰 39건(10.1%), 공무원 31건(8.1%), 교육자와 무직이 각각 30건(7.8%), 회사원 27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01. 1. 1. ~ 2005. 12. 31.)

연도 신청인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개인	307	216	247	265	385	1,420(40.1)
국가기관	48	22	164	190	146	570 (16.1)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23	26	43	33	31	156 (4.4)
공공단체	14	17	17	30	22	100 (2.8)
정당	4	10	1	3	7	25 (0.7)
조합 및 협회	87	49	60	69	87	352 (10.0)
일반단체	61	35	71	34	58	259 (7.3)
종교단체	7	12	16	11	19	65 (1.8)
기업체	66	90	71	98	103	428 (12.1)
언론사	19	20	10	15	10	74 (2.1)
금융기관	3	3	1	1	3	11 (0.3)
교육기관	10	7	14	8	12	51 (1.4)
의료기관	10	4	9	2		25 (0.7)
계	659	511	724	759	883	3,536(100.0)

다른 신청인 유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국가기관의 청구건수가 2004

년에 비해 44건이나 줄어들어 주목된다. 전체 청구사건 중 국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4년 25.0%에서 2005년 16.5%로 10% 가까이 줄어들어 더욱 뚜렷하게 감소 추이를 엿볼 수 있다.

반면 개인이 청구한 건수는 2004년에 비해 120건이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조정신청건수의 증가분인 124건과 거의 같은 수치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민에게 간이하고도 신속, 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자 조정대상매체 및 조정대상청구의 확대, 조정신청기간의 연장, 조정신청방식의 다양화 등의 입법 조치를 취한 언론중재법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가 TV,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년 대비 2.5배(2004년 158회, 2005년 393회)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광고를 내보낸 것도 개인이 청구한 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과는 달리 개인의 경우는 아직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광고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6. 중재부별 조정신청현황

중재부별 현황은 서울의 6개 중재부가 592건(67.0%)이었고, 지방 10개 중재부에 291건(33.0%)이 청구되어 서울에서 처리한 사건이 지방보다 2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언론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중재부(87건)와 광주중재부(45건)가 처리한 건수가 지역 중재부에서 처리한 조정신청 사건(291건)의 45.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청구현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나 언론사의 수가 반드시 청구건수와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중재부별 현황

(2001. 1. 1. ~ 2005. 12. 31.)

연도 중재부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서울중재부	428	307	496	558	592	2,381 (67.3)
부산중재부	21	15	18	27	35	116 (3.3)
대구중재부	18	14	20	17	14	83 (2.3)
광주중재부	32	39	40	32	45	188 (5.3)
대전중재부	19	16	20	15	18	88 (2.5)
경기중재부	62	45	64	41	87	299 (8.5)
강원중재부	9	7	10	13	15	54 (1.5)
충북중재부	16	16	6	4	10	52 (1.5)
전북중재부	36	25	25	27	29	142 (4.0)
경남중재부	17	20	16	20	25	98 (2.8)
제주중재부	1	7	9	5	13	35 (1.0)
계	659	511	724	759	883	3,536 (100.0)

7. 매체 유형 및 취재원별 조정신청현황

조정대상이 된 기사의 취재원을 모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정심리 과정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일간지·통신은 기자가 직접 인지한 경우가 181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자료 111건(21.8%), 민원 및 제보 100건(19.6%) 등의 순이었다. 이와 달리 방송의 경우는 민원 및 제보가 66건(37.9%)으로 제일 많았고, 기자 직접인지가 53건(30.5%), 민·형사사건기록 29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매체유형 및 취재원별 현황

(2005. 1. 1. ~ 2005. 12. 31.)

매체유형 \ 취재원	기자직접 인지 취재	민원 및 제보	민·형사 사건기록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	통신 및 타매체 보도	인터넷 사이트	기 타	합 계
일간지·통신	181	100	86	111	11	4	17	510
방 송	53	66	29	17	2	1	6	174
주간신문	62	36	1	3	4	3	4	113
잡 지	14	15	1	1	3	3		37
인터넷신문*	15	11	2	10		1	9	48
기 타							1	1
합 계 (%)	325 (36.8)	228 (25.8)	119 (13.5)	142 (16.1)	20 (2.3)	12 (1.3)	37 (4.2)	883 (100.0)

*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건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접수·처리

8. 매체 유형 및 기사내용별 조정신청현황

2005년 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사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기사가 453건(51.3%)으로 과반수에 달했으나 매체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간신문·통신은 사회기사 263건(51.6%)에 이어 정치행정 기사 111건(21.8%), 경제기사 54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은 사회기사가 122건(70.1%)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의료건강기사가 12건으로 정치행정기사 10건 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 잡지와 인터넷신문 또한 기사내용에 있어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8] 매체유형 및 기사내용별 현황

(2005. 1. 1. ~ 2005. 12. 31.)

매체유형	기사내용 구분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종교	의료	스포츠	부고	교육	언론	기타	합계
		행정	제	회	환경	화	교	건강	초	및	육	론	타	
일간신문·통신	중앙지	73	22	112	8	1		3		3	3	3	12	240
	지방지	26	8	128	7	6		3		1	8	1	3	191
	경제지	10	21	11	4			1			4		4	55
	스포츠지			2										2
	특수일간지	1	2								1			4
	통신	1	1	10		2		1	2		1			18
	소계	111	54	263	19	9		8	2	4	17	4	19	510
방송	전국방송	10	3	83	3	2	4	8			5	1	5	124
	지역방송			22				2			1		1	26
	CATV		2	17		2		2					1	24
	소계	10	5	122	3	4	4	12			6	1	7	174
주간신문		18	6	50	3	1	11	3	2	2	6	5	6	113
잡지		9		8			8	1	3	4		2	2	37
인터넷신문*		4	5	10			8	4	8		6	3		48
기타							1							1
합계		152	70	453	25	14	32	28	15	10	35	15	34	883
(%)		(17.2)	(7.9)	(51.3)	(2.8)	(1.6)	(3.6)	(3.2)	(1.7)	(1.1)	(4.0)	(1.7)	(3.9)	(100.0)

*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

제3절 조정신청 처리현황

1. 조정신청사건 처리결과의 개요

2005년에 조정신청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합의 334건(37.8%), 취하 283건(32.0%), 조정불성립결정 181건(20.5%), 직권조정결정 51건(5.8%), 기각 19건(2.2%), 각하 15건(1.7%)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처리결과와 비교하면 합의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직권조정결정이 줄어들고, 조정불성립결정과 각하가 늘어났다.

직권조정결정이 줄어들고 조정불성립결정이 많아진 요인 중의 하나는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새로 도입된 영향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는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와는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 및 피해자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 하므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5년까지 조정신청 처리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2004. 1. 1. ~ 2005. 12. 31.)

구분 연도 \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4	759 (100%)	283 (37.3)	68 (8.9)	140 (18.5)	13 (1.7)	0 (0.0)	255 (33.6)
2005	883 (100%)	334 (37.8)	51 (5.8)	181 (20.5)	19 (2.2)	15 (1.7)	283 (32.0)

[표 10]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1981. 3. 31. ~ 2005.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81	44	9			12 (5)	1	2	20 (2)	
1982	50	19			19 (5)		2	10 (4)	
1983	71	21			22 (7)	1	1	26 (8)	
1984	54	12			29 (8)	3		10 (5)	
1985	59	12			28 (5)	4		15 (7)	
1986	49	14			10 (2)	1		24 (11)	
1987	47	10			9 (4)	1		27 (2)	
1988	55	16			12 (5)		1	26 (13)	
1989	121	29			35 (10)		6	51 (21)	
1990	159	42			43 (10)	1	2	71 (4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1999	641	244	11	18 (2)	102 (16)	24	5	237 (92)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2003	724	287	15	15 (3)	101 (10)	27	3	276 (159)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계	9,234	2,995	163	152 (27)	1,848 (260)	220	53	3,803 (1,899)	
	100.0%	32.4%	1.8%	1.6%	20.0%	2.4%	0.6%	41.2%	

※ ()안의 숫자는 합의 및 조정결정 중 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직권조정결정제도 1996. 7. 1.부로 시행

1996년 7월 1일, 개정 정기간행물법의 시행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96년 하반기 동안에는 불과 9건의 직권조정결정이 있었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68건과 51건의 직권조정결정이 있어 직권조정결정제도도 분쟁해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피해구제율 현황

2005년에는 849건(기각·각하 제외)의 조정건수 중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사건,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 기타 처리 결과 중에서 정정 또는 반론 등이 보도된 사건 등 모두 530건에 대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신청인의 피해구제율은 62.4%를 기록했다[표 11].

[표 11]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현황

(1981. 3. 31. ~ 2005. 12. 31.)

연도 \ 구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1981~2002	6,868	196	6,672	3,845	57.6
2003	724	30	694	474	68.3
2004	759	13	746	495	66.4
2005	883	34	849	530	62.4
계	9,234	273	8,961	5,344	59.6

3. 청구권별 처리결과

정정보도과 반론보도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건수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정정42.4%, 반론 43.3%)와 기타 처리결과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합의율(11.3%)은 현저히 낮고 취하율(47.5%)은 높게 나타나는 등 다른 청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2].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청의 주된 목적이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었고, 그리하여 언론사 측에서 신청인의 반론 또는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경우 그에 만족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청구권별 처리결과

(2005. 1. 1. ~ 2005.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정정	531 (100%)	225 (42.4)	28 (5.3)	108 (20.3)	9 (1.7)	7 (1.3)	154 (29.0)
반론	194 (100%)	84 (43.3)	16 (8.3)	32 (16.5)	7 (3.6)	1 (0.5)	54 (27.8)
추후	17 (100%)	9 (52.9)					8 (47.1)
손배*	141 (100%)	16 (11.3)	7 (5.0)	41 (29.1)	3 (2.1)	7 (5.0)	67 (47.5)
계 (%)	883 (100.0)	334 (37.8)	51 (5.8)	181 (20.5)	19 (2.2)	15 (1.7)	283 (32.0)

* 손해배상청구는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접수·처리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에 따라서도 처리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합의율(각각 47.3%, 54.6%)은 높고 조정불성립결정율(각각 9.6%, 4.5%)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합의율(33.0%)은 낮고, 조정불성립결정율(23.9%)은 비교적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13].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합의율이 다른 신청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영향력을 언론사가 인정해 쉽게 합의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유추할 수도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기사의 쟁점사항에 관련된 각종 반박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고, 조정심리 과정에서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 경우가 많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05. 1. 1. ~ 2005. 12. 31.)

신청인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385 (100%)	127 (33.0)	22 (5.7)	92 (23.9)	13 (3.4)	10 (2.6)	121 (31.4)
국가기관	146 (100%)	69 (47.3)	13 (8.9)	14 (9.6)	1 (0.7)	1 (0.7)	48 (32.9)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31 (100%)	12 (38.7)	4 (12.9)	9 (29.0)			6 (19.4)
공공단체	22 (100%)	12 (54.6)		1 (4.5)			9 (40.9)
정당	7 (100%)	5 (71.4)					2 (28.6)
조합 및 협회	87 (100%)	37 (42.6)		22 (25.3)	1 (1.1)	1 (1.1)	26 (29.9)
일반단체	58 (100%)	23 (39.7)	2 (3.4)	13 (22.4)	1 (1.7)	3 (5.2)	16 (27.6)
종교단체	19 (100%)	7 (36.8)	1 (5.3)	3 (15.8)			8 (42.1)
기업체	103 (100%)	35 (33.9)	5 (4.8)	21 (20.4)	3 (3.0)		39 (37.9)
언론사	10 (100%)	2 (20.0)	2 (20.0)	5 (50.0)			1 (10.0)
금융기관	3 (100%)		2 (66.7)				1 (33.3)
교육기관	12 (100%)	5 (41.7)		1 (8.3)			6 (50.0)
계(%)	883 (100%)	334 (37.8)	51 (5.8)	181 (20.5)	19 (2.2)	15 (1.7)	283 (32.0)

5.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표 14]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2005. 1. 1. ~ 2005. 12. 31.)

매체유형		처리결과						
		청구 건수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신문	중앙일간지	301 (100%)	113 (37.5)	17 (5.7)	55 (18.3)	10 (3.3)	1 (0.3)	105 (34.9)
	지방일간지	191 (100%)	70 (36.6)	2 (1.1)	32 (16.8)	1 (0.5)	4 (2.1)	82 (42.9)
	주간신문	113 (100%)	54 (47.8)	4 (3.5)	26 (23.0)		1 (0.9)	28 (24.8)
방송	TV	148 (100%)	50 (33.8)	18 (12.2)	30 (20.2)	7 (4.7)	1 (0.7)	42 (28.4)
	라디오	3 (100%)		2 (66.7)	1 (33.3)			
	CATV	23 (100%)	8 (34.8)		7 (30.4)			8 (34.8)
잡지		37 (100%)	17 (46.0)	6 (16.2)	11 (29.7)			3 (8.1)
통신		18 (100%)	6 (33.3)		6 (33.3)	1 (5.6)	2 (11.1)	3 (16.7)
인터넷신문*		48 (100%)	15 (31.2)	2 (4.2)	13 (27.1)		6 (12.5)	12 (25.0)
기타		1 (100%)	1 (100.0)					
계 (100%)		883 (100%)	334 (37.8)	51 (5.8)	181 (20.5)	19 (2.2)	15 (1.7)	283 (32.0)

*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건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접수·처리

매체유형별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으나 지방일간지의

경우 직권조정결정과 기각결정이 각각 2건(1.1%)과 1건(0.5%)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각하가 6건(12.5%)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과 지방(10개 지역)이 합의율은 37.8%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의 경우 직권조정결정이 45건(7.6%), 조정불성립결정 130건(22.0%), 기각 17건(2.9%), 각하 9건(1.5%), 취하 167건(28.2%)이었으며, 이에 비해 지방(10개 지역)은 직권조정결정 6건(2.1%), 조정불성립결정 51건(17.5%), 기각 2건(0.7%), 각하 6건(2.1%), 취하 116건(39.9%)로 나타났다[표 15].

서울에 비해 지방중재부는 직권조정과 불성립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소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인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향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15] 중재부별 처리결과

(2005. 1. 1. ~ 2005. 12. 31.)

중재부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서울	592 (100%)	224 (37.8)	45 (7.6)	130 (22.0)	17 (2.9)	9 (1.5)	167 (28.2)
부산	35 (100%)	8 (22.8)	1 (2.9)	7 (20.0)	1 (2.9)		18 (51.4)
대구	14 (100%)	4 (28.6)		2 (14.3)			8 (57.1)
광주	45 (100%)	17 (37.8)		8 (17.8)		1 (2.2)	19 (42.2)
대전	18 (100%)	8 (44.4)		5 (27.8)			5 (27.8)
경기	87 (100%)	27 (31.0)	1 (1.1)	24 (27.6)		1 (1.1)	34 (39.2)
강원	15 (100%)	7 (46.7)					8 (53.3)
충북	10 (100%)	4 (40.0)					6 (60.0)
전북	29 (100%)	15 (51.7)	4 (13.8)	4 (13.8)			6 (20.7)
경남	25 (100%)	15 (60.0)				4 (16.0)	6 (24.0)
제주	13 (100%)	5 (38.5)		1 (7.7)	1 (7.7)		6 (46.1)
계 (%)	883 (100%)	334 (37.8)	51 (5.8)	181 (20.5)	19 (2.2)	15 (1.7)	283 (32.0)

7. 손해배상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손해

배상청구는 언론중재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28일 이후 141건(법 시행 후 총 건수의 29.6%)이 접수·처리되었고, 처리결과는 합의 16건(11.3%), 직권 조정결정 7건(5.0%), 조정불성립결정 41건(29.1%), 취하 67건(47.5%), 기각 3건(2.1%), 각하 7건(5.0%)이며, 손해배상에 합의한 것 외 정정·반론 등 피해구제보도로 만족하여 취하한 것을 모두 포함, 피해구제율은 51.9%로 나타났다.

[표 16] 손해배상사건 처리결과

(2005. 7. 28. ~ 2005. 12. 31.)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41	16	4	3	41	3	7	67 (48)	51.9%
100.0%	11.3%	2.8%	2.1%	29.1%	2.1%	5.0%	47.5%	

※ ()안의 숫자는 합의 및 조정결정 중 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에 비하여 신청인이 취하하는 사건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신청인의 주된 목적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지 손해배상에 의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데 있지 않다는 점,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언론사측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악화되었던 감정을 풀고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및 피신청인은 정정·반론보도에 합의하는 것을 양보로 생각하고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양보로 생각하며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위원회의 각 중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보도로서 충분한 취재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거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제22조에 기해 손해배상에 관한 직권조정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청구액은 최대 41억 5천만원인 사례가 있었으나 많은 경우 1억원 내외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합의 또는 직권조정결정에 의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이었다. 명예나 인격권은 본래 금전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데다가 신청인이 명예훼손에 대한 격앙된 감정을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액으로 나타내는 경향도 있어 신청인은 청구액을 고액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는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수백 내지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정과 변호사 수임료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합의 또는 직권조정결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청구액에 비하여 소액에 그치고 있다.

손해배상사건이 조정대상에 포함된 이후 5개월 동안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지만, 신청인으로서도 무비용으로 간이하면서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 및 정정보도 등의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향후 추세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조정절차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형성되는 듯한 경향이 보인다. 그 경우 언론사의 입장에서조차 조정절차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이익과 아울러 손해배상액 면에 있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비해 좀 더 가벼운 책임을 부담하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인터넷신문에 대한 처리결과

[표 17] 인터넷신문에 대한 처리결과

(2005. 7. 28. ~ 2005. 12. 31.)

처리결과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정정	29 (100%)	13 (44.8)	1 (3.5)	6 (20.7)		5(17.2)	4 (13.8)
반론	2 (100%)	2 (100.0)					
손배	17 (100%)		1 (5.9)	7 (41.2)		1 (5.9)	8 (47.0)
계(%)	48 (100.0)	15 (31.2)	2 (4.2)	13(27.1)		6(12.5)	12(25.0)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불과 5개월 동안 이루어진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매체와는 다른 인터넷신문만의 특징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5년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각하로 처리된 14건[표 18 참조] 중 인터넷신문에 대한 각하가 6건이나 된 것은, 당해 조정신청이 법 시행 이전에 보도된 인터넷 기사나 법 시행 이후의 기사이더라도 법(언론중재법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에 비해 청구건수 대비 각하결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9.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처리결과

[표 18]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과 이후 처리결과

(2005. 1. 1. ~ 2005. 12. 31.)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	407 (100%)	172 (42.3)	22 (5.4)	70 (17.2)	14 (3.5)	1 (0.2)	128 (31.4)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476 (100%)	162 (34.0)	29 (6.1)	111 (23.3)	5 (1.1)	14 (2.9)	155 (32.6)
계 (%)	883 (100%)	334	51	181	19	15	283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조정신청 처리결과를 법 시행 이전의 처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합의율은 8.3% 떨어진 반면, 조정불성립결정율은 6.1%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율이 낮아진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새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가 신청인들의 언론피해 회복 수단을 확대하고 강화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합의율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청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와 병합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도 많았다. 조정절차에서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끝까지 고수하여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들

도 있었다.

10. 조정절차에서의 사실 및 증거조사 활동

언론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거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므로, 조정기관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진술 및 의견을 듣거나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언론중재법은 제20조에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인 조정결과에 이르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의 조정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21일)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법 제19조, 제22조),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단기의 사건처리기간 내에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적시에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심리가 지연되거나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각 중재부에서는 기일의 공전을 막고자 사무처의 증거조사 담당부서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1회 기일 또

1)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언론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사건을 14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단기의 사건처리기간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19조의 입법의도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다.

는 제2회 기일 전에 미리 확보·정리하도록 하여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정성립률의 제고와 당사자의 조정절차에 대한 만족감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거조사 현장

문서(또는 녹화테이프 등의 기록)가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문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여 그 사본을 제출받기도 하며, ③언론보도 내용과 관련된 사건관련자가 있는 경우 그를 참고인으로 하여 진술을 청취하기도 하고, ④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수중에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를 제출받고 있다.

위원회의 각 중재부는 다양한 언론보도와 관련된 조정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①언론보도 내용과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거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그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관련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그 회신결과를 조정사건 처리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고, ②제3자의 수중에 사건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제4절 운용 평가 및 전망

2005년은 언론중재법의 시행과 더불어 위원회의 조정신청 사건처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손해배상청구가 조정신청 대상이 되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 또한 조정신청 대상 매체에 포함되었으며,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국민들의 조정신청의 폭이 넓어졌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더불어 확대된 위원회의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정심리의 실효성과 사건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의 각 중재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언론관련 분쟁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때로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하여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조정심리를 보좌하는 사무처 조사관들도 업무처리 능력 개선을 위해 자체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정신청 당사자에게는 공식적인 문서 송달 외에도 조정심리 진행에 관련된 사안과 후속보도 여부에 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위원회 조정절차에 새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조정신청 단계에서 신청인들로 하여금 발생한 피해에 비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적절히 유도한다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용이해지고,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신청인들의 피해구제율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언론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며 강제력은 없다.

시정권고는 새롭게 부여된 기능이 아니다. 위원회는 1981년 창립이후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2005년까지 4,796건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하여 왔다.

물론 언론중재법은 시정권고 대상 언론매체를 기존의 정기간행물에서 방송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고 권리침해 당사자나 제3자가 시정권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권고 기능을 확대·강화하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위원회의 자체심의에 의한 시정권고 기능마저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오해하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시정권고가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며, 사후 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지금까지 시정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은 그 설득력을 상실한다.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목격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사생활침해가 되는 내용, 마약의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을 상세 보도한 경우 등 인권침해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을 뿐이다.

언론의 여론형성 및 사회감시기능을 위축시키거나 의견의 다양성을 저해

하는 위험요소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언론보도 창출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심의 기능이라 보여진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법 시행 첫 해인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자체심의 275건, 신청심의 3건 등으로 총 278건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하였다. 이는 '제3자 시정권고 신청제도' 신설 및 심의대상 매체의 확대 등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04년 283건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이다.

2005년도에 위원회가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내용 가운데 자살보도와 관련 자살자나 유가족의 신원을 공개하여 심의기준에 저촉된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2004년 기자협회 등에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어 각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으나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관행이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살기사가 너무 많고, 특별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지나치게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공인이든 일반 서민이든 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감안하지 않고 흥미 위주의 접근방식이 그 원인이라 평가된다.

한편 시정권고 기준과 관련,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시정권고 건

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19] 2001~2005년 시정권고 현황

연도	침해 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법· 공개 등	자살 관련 상세묘사	기타	
2001	231 (100%)	22 (9.5)	10 (4.3)	9 (3.9)	70 (30.3)	2 (0.9)	119 (51.5)			
2002	142 (100%)	9 (6.3)			88 (62.0)	1 (0.7)	44 (30.1)			
2003	237 (100%)	13 (5.5)	1 (0.4)	41 (17.3)	153 (64.6)	1 (0.4)	20 (8.4)	6 (2.5)	1 (0.4)	
2004	283 (100%)	7 (2.5)	1 (0.4)	114 (40.3)	68 (24.0)	2 (0.7)	52 (18.4)	21 (7.4)	18 (6.4)	
2005	278 (100%)	11 (4.0)		88 (31.7)	24 (8.6)	10 (3.6)	47 (16.9)	85 (30.6)	13 (4.7)	
계	1,171 (100%)	62 (5.3)	12 (1.0)	252 (21.5)	403 (34.4)	16 (1.4)	282 (24.1)	112 (9.6)	32 (0.2)	

2. 자체심의 결과

(1) 침해유형별 분석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5년 총 548개 매체에 대해 자체심의한 결과 총 275건의 법익침해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하였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사례가 88건(32.0%)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살 관련 상세묘사 85건(30.9%),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47건(17%), 특정강력범죄사건 목격자·피해자·신고자 신원공포가 24건(8.7%), 기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사례 12건(4.3%), 성폭행피해자 신원공포 11건(4.0%), 기타 8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법익침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형사사건 피의자 신원보호 여전히 미흡

최근 들어 사회 각계에서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보호해 주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헌법 제27조제4항에 규정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위원회도 이 원칙에 따라 미성년피의자 뿐만 아니라 2003년 하반기부터 보호범위를 성년 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피의자’ 관련 위반 사례가 2003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005년의 위반 건수는 2004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여타 침해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여전히 형사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나. 자살 보도 급증

‘자살 보도’ 조항은 2004년 3월에 한국자살예방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개최한 〈자살예방과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확립한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04년 8월 시정권고심의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침해유형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자살 증가율이 최고를 기록할 만큼 우울증 등 심리적 요인이나 충동 등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면서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자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미디어에 의해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일컫는 모방 자살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자살예방과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확립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제안으로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우려에 상응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권고심의기준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하반기부터 ‘자살 보도’ 조항이 심의에 적용되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례는 2005년 85건으로 2004년 21건에 비해 무려 4배가 증가했다. 특히 ‘자살 보도’ 조항 중 가장 빈번하게 위반되는 사항은 ‘자살자 및 유족의 신원공개’이다. 이 조항은 자살자(자살 미수자 포함)의 신원이 특정됨으로써 자살자 및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자 및 유족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보인다.

다. 마약류 관련 보도는 예년과 비슷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해당 건수는 2005년 47건으로, 2004년 52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보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마약류의 명칭·사용량·사용방법 등만을 공표하는 기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새로운 마약류의 종류 및 환각적 효능·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기사가 증가하여 ‘마약 보도’ 조항 내에서도 침해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기타 침해유형

과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사례는 2003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4년부터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2005년엔 24건으로 2004년 68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작년부터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고,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책이 마련되면서 언론보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인다.

한편, 2005년 한 해 동안 ‘사생활 침해 등’ 해당 건수는 10건으로 2004년 2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이는 내연관계로 인한 형사사건을 다룬 동일한 내용의 보도 6건에 대해 시정권고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에 해당하는 위반사례는 2004년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범죄 묘사’, ‘성관련 보도’ 등 기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사례는 소폭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마. 국가적 법익침해 사례

법 시행 이전부터 여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국가적 법익침해’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국가적 법익침해’에 관련 2개의 조항이 있는 시정권고심의기준이 실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내부적인 운영방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0] 2005년도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현황

연도	침해 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등 공개	자살 관련 상세묘사	기타	
2005	275	11		88	24	8	47	85	12	

(2) 매체유형별 분석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심의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 매체는 대부분 일간신문(245건, 89.0%)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뉴스통신 19건(6.9%), 주간신문이 8건(2.9%), 인터넷신문 2건(0.7%), 월간지 1건(0.3%)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간신문의 위반 사례가 많은 이유는 매일 발행되는 만큼 기사량이 많은 데다 여타 인쇄매체에 비해 신속성이 요구되는 등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일간신문 245건(100.0%) 중 중앙일간지는 44건(17.9%)임에 반해, 지역일간지는 201건(82.0%)으로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역일간지의 제반 취재 여건이 열악한 데다, 인격권 보호에 대한 교육 수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따른 현실적 요인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3)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법과 같은 시기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하 '신문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신문'이 새롭게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기존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더해 '인터넷신문'과 '방송'까지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21] 2005년도 자체심의 매체별 현황

구 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간별	계				
일간 신문	중앙	44	22	22	
	지방	201	96	105	
뉴스통신		19	9	10	
주간 신문	종합	3	1	2	
	지역	5	1	4	
월간지		1		1	
인터넷신문		2	2		
총 계		275	131	144	

인터넷신문이 새롭게 시정권고 심의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정권고 건수가 급증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체심의에 따른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는 단 2건에 그쳤다. 이는 사실상 온라인 기사에 대한 독점적 유통 창구로서 파급력이 상당한 포털 사이트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등록·심사제가 2005년 하반기부터 실시되어 현재로서는 아직 초기 정착 단계인 데다, 여타 매체에 비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이 열악하여 실질적인 기사 업데이트가 미진한 점 등이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적었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추측된다.

3. 신청심의 현황

(1) 시정권고 신청 사건 분석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과 더불어 신설된 '제3자 시정권고 신청'은 법 시행 이후 5개월여 동안 총 17건이 접수되어 시정권고 3건, 기각 9건, 취하 4건, 기타 1건 등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한 달 평균 3.4건이 접수된 것으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요건이 없는 '제3자 시정권고 신청'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매체에 대한 신청을 낱발하게 하여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위축 효과 : chilling effect)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다소 거리가 먼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간신문 3건, 주간지 1건, 월간지 3건, 인터넷신문 4건, 뉴스통신 2건, 방송 4건 등에 대해 신청이 접수되어 대상 매체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신청인 유형을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제3자 시정권고 신청' 17건 모두 개인에 의해 이뤄졌고 단체나 기관 등에 의한 신청은 없었다. 시정권고 신청사유의 대부분은 개인적 법익침해(15건)를 이유로 제기하였으며, 사회적 법익침해 보도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법익 침해 중에서도 주로 명예훼손에 관한 신청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중 특정 연예인에 관한 비판 보도에 대해 팬으로서 대응하기 위한 취지의 신청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시정권고를 통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시정권고 신청 결과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5년 하반기동안 접수된 총 17건 중 단 3건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의결하였다. 모두 개인 신분으로 신청한 사건으로서,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법익 침해 2건, 사회적 법익 침해 1건이다. '제3자 시정권고 신청'에 의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중앙일간지 1건, 지상파방송 1건, 경제분야 인터넷신문 1건이다.

위 매체들에 대해서는 각각 법원의 판결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되도록 보도했다거나, 타인의 칼럼 내용 중 일부만을 부각하여 인용함으로써 칼럼의 전체 취지를 왜곡하고, 생활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를 의결하였다.

[표 22] 신청심의 의결현황

간별	구분 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기타	시정 권고	기각	각하	취하	기타
일간신문	3	3				1	2			
주간지	1	1							1	
월간지	3	3					3			
인터넷신문	4	4				1			1	
뉴스통신	2	2							2	
방 송	4	2	1		1	1	2			1
총 계	17	15	1		1	3	7		4	1

한편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 방송 매체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여건 상 자체심의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신청에 의해 접수된 사건에 한해 방송 매체에 대한 심의·의결을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3절 운용 평가

시정권고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기간행물법상의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것에서 방송과 인터넷신문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고, 둘째, 법 시행 이전에는 자체심의를 의해서만 시정권고가 이뤄진 데 반해, 법 시행 이후에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시정권고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동안 제도권 밖의 매체로서 권리와 책임이 모두 제한되었던 인터넷언론 중 일부가 '인터넷신문'의 개념으로 한정적으로나마 '언론'의 법적 개념에 포함되면서 언론중재법상 각종 피해구제제도의 대상으로도 편입되었다. 여러 규제의 적용을 받았던 기존 언론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신문은 그동안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매체 특성상 기존 매체에 비해 언론 윤리 의식이 저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심의대상 매체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면서 시정권고 건수 역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전체 시정권고 건수 중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7%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신문이 여타 매체에 비해 시정권고심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드물었다기보다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심사제가 처음 실시되어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기사량이 풍부하고 유통이 활발한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닷컴 등이 인터넷신문에서 제외됨에 따라 심의의 실효성이 저하된 것도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닷컴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데다,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닷컴 등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제도권 영역 밖의 매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05. 12. 31.까지 '피해자 및 제3자 시정권고 신청'은 총 17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신청취지를 살펴보면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가 아닌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중재절차상의 '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과 혼동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신청인 중 상당수는 '시정권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익침해 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같은 유형의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3자 시정권고 신청'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사실공표가 형사사건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영원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재사회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수사과정의 언론보도와 인권보호"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2005. 1. 19.)하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2005. 4. 25.)하는 등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충될 예정이고 2005년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종 범죄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폭넓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 관련 인격권 보호에 대한 선진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장기적으로는 범죄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3장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제1절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1. 개요

위원회는 2004년 4월 1일부터 국민들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근 변호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전문상담원을 두어 조정·중재신청방법, 민·형사상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신청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정보도청구소송, 가처분신청, 형사절차 등 다양한 피해구제방법을 안내받게 되어 좀 더 효과적으로 언론피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총 2,353건의 상담을 처리하였다. 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200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상담원이 친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상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73.8%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상담원이 상담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는 답변이 75.5%로 나타나는 등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스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가 별도의 상담창구를 신설, 운영하는 취지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상담사례 분석

(1) 상담신청 유형

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전화,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담 등 다양한 상담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총 상담건수 2,353건 중 전화 상담이 1,815건(77.1%)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방문 상담 267건(11.3%), 인터넷실시간 상담 147건(6.2%), 인터넷게시판 상담 94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상담신청 유형

(2005. 1. 1. ~ 2005. 12. 31.)

상담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담	기타
2,353 (100%)	1,815 (77.1%)	267 (11.3%)	147 (6.2%)	94 (4.0%)	16 (0.7%)	14 (0.6%)

(2) 상담처리 결과

상담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절차 안내 1,663건(63.2%), 법적절차 안내 554건(21.0%)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타기관 안내 246건(9.3%), 기타 64건(2.4%), 재상담 예정 63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1,815건)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7.6% 늘었고(2004년 55.6%, 2005년 63.2%), 법적절차 안내가 4.7% 줄어들었다는

점이다(2004년 25.7%, 2005년 21.0%). 이러한 현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의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즉,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올 경우 과거에는 법적절차 안내로 그칠 수밖에 없었으나 새 법 시행과 더불어 조정절차를 안내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조정절차 안내 비율이 더 늘어나고, 법적절차 안내 비율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절차 관련 상담 1,663건 가운데 446건이 조정신청되어 조정절차를 안내한 상담 후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비율은 26.8%로 조사되었다. 결국 조정절차 관련 상담 4건 가운데 1건 정도가 조정신청으로 이어져 조정신청을 원하는 상담신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상담처리 결과

(2005. 1. 1. ~ 2005. 12. 31.)

상담 건수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 신청 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타기관 안내	재상담 예정	기타	자체 종결	총계	
2,353	1,663 (63.2%)	554 (21.0%)	246 (9.3%)	63 (2.4%)	64 (2.4%)	42 (1.6%)	2,632 (100%)	446 (26.8%)

※ 상담처리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결과의 합계가 불일치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 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관한 상담을 의미

* 조정신청 접수율(26.8%)은 조정절차 안내건수 대비 조정신청 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3) 피해유형

상담창구를 이용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명예훼손이 1,710건(71.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172건(7.1%), 신용훼손 51건(2.1%), 사생활 침해 42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초상권·음성권·성명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표 25] 피해 유형

(2005. 1. 1. ~ 2005. 12. 31.)

상담 건수	피 해 유 형					총계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신용훼손	사생활 침해	기타	
2,353	1,710 (71.0%)	172 (7.1%)	51 (2.1%)	42 (1.7%)	435 (18.0%)	2,410 (100%)

* 피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피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4) 매체유형

매체유형은 일간신문이 780건(3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송 595건(23.5%), 인터넷 215건(8.5%), 주간신문 207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간신문과 방송매체의 경우 해당 매체수의 양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론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신청건수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인터넷신문 관련 상담건수가 2004년도와 비교해 늘었는데 이는 새로운 언론중재법에 따라 인터넷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라 볼 수 있겠다.

한편,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 7월 28일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신문 상담건수는 총 127건이었는데, 이 중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이 되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71건이었고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이 안되는 종속형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이트가 56건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종속형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조정절차를 안내할 수 없고, 단지 법적 절차만을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제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종속형 인터넷신문과 포털뉴스도 조속히 조정대상 매체에 해당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표 26] 매체 유형

(2005. 1. 1. ~ 2005. 12. 31.)

상담 건수	매 체 유 형									
	일간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주간 신문	뉴스 통신	월간지	시사 주간지	기타	불명	총계
2,353	780 (30.9%)	595 (23.5%)	215 (8.5%)	207 (8.2%)	76 (3.0%)	57 (2.3%)	27 (1.1%)	10 (0.4%)	561 (22.2%)	2,528 (100%)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5) 신청인 유형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개인(1,241건, 52.7%)으로, 전체 상담 신청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회사 228건(9.7%), 일반 단체 120건(5.1%), 공공단체 39건(1.7%) 등의 순으로 상담창구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격권 침해가 주를 이루는 언론피해사건의 특성상 상담신청인이 익명으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전체 상담 건수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표 27] 신청인 유형

(2005. 1. 1. ~ 2005. 12. 31.)

상담 건수	개인	회사	일반 단체	공공 단체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기타	불명
2,353 (100%)	1,241 (52.7%)	228 (9.7%)	120 (5.1%)	39 (1.7%)	19 (0.8%)	8 (0.3%)	2 (0.1%)	696 (29.6%)

(6) 상담내용 유형

상담내용 유형으로는 정정 및 반론보도 안내가 1,695건(66.0%)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손해배상 484건(18.8%), 기타 358건(13.9%), 형사고소·고발 13건(0.5%), 추후보도 12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은 문제된 기사가 정정된 이후에도 계속 웹상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사의 삭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언론중재법 규정만으로는 문제되는 기사를 삭제토록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원 보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정보도의 취지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임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을 의

미하므로, 인터넷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할 때는 부가적으로 조정대상기사의 삭제도 요청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표 28] 상담내용 유형

(2005. 1. 1. ~ 2005. 12. 31.)

상담 건수	상 담 내 용							총계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 배상	형사고소 고발	추후 보도	강제집행 절차	금지 청구	기타	
2,353	1,695 (66.0%)	484 (18.8%)	13 (0.5%)	12 (0.5%)	4 (0.2%)	3 (0.1%)	358 (13.9%)	2,569 (100%)

* 상담내용 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3.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 마련

위원회 상담부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고통 받는 국민과 언론 등 언론분쟁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위원회의 대민 창구이다.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평가에 직결되고, 따라서 상담서비스는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1) 상담창구의 접근성 제고

위원회는 언론보도의 파급력과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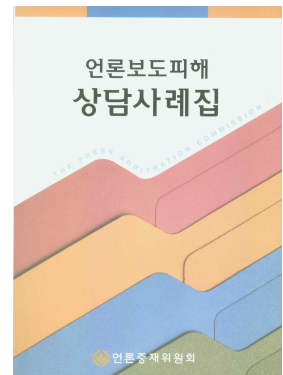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원의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전화와 인터넷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근무시간 후나 토요일에도 언론보도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확충하였다.

(2)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발간

자주 발생하는 언론피해 유형에 대해 사례집을 만들어 실무에 이용하고,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2004년에 이어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상담이 종결되면서 자칫 사장되기 쉬운 각종 상담사례들을 모아 분석하여, 제도 개선 활동과 상담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내지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초상·음성·성명·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조정신청절차와 관련된 문의, 악의적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의 등 다양한 상담사례의 전형을 법조문, 판례 등과 함께 묶어 수록한 것이다. 언론보도의 피해자에게는 올바른 구제방향을 제시하고, 언론사에게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4. 평가

위원회는 지난 2년간 4,169건에 이르는 상담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인격권 보호와 신장에 기여하여 왔으며, 대내적으로는 상담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였다. 위원회는 그간의 상담부서 운용 경험을 토대로 2006년도에는 책임상담제를 시행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책임상담제는 상담신청인과의 최초 상담자가 해당 상담 건에 관한 책임상담자가 되어 '재상담' 및 '조정신청서 접수 단계에서의 신청서 검토'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상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책임상담제는 상담신청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상담 업무 자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신청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상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상담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담창구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2절 교육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1. 개요

위원회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바르게 알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언론사, 대학교, 공·사기업, 민간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보도

의 주체가 되는 언론사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못지않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취재·보도행위의 유형이나 언론관련 판결의 추이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언론피해구제교육 현장

위원회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총 6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중 45회의 교육을 언론사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주 업무인 언론분쟁의 사후 해결과 더불어 언론분쟁의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위원회가 인격권 보호와 향상은 물론 언론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론사가 공감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회의 대학교 교육에서는 사회진출을 눈앞에 둔 학생들이 언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공·사기업 2회, 민간단체 2회, 기타 5회 등의 교육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또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방법 등을 안내한 것과 언론사가 알아야 할 언론

보도분쟁 대처 방안 및 방지책 등을 안내하는 두 가지 교재를 발간했다. 교육책자는 다양한 사례와 법률을 담아 교육 시간은 물론, 실제 분쟁 발생 시에도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표 29] 교육 현황

연번	일 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주 제
1	2005. 1. 20.	한국언론재단	조선일보, 세계일보 수습기자	언론피해 사례 Role Play
2	2005. 2. 1.	MBC	기자, PD 및 임직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3	2005. 2. 3.	MBC	"	"
4	2005. 2. 3.	MBC	"	"
5	2005. 2. 5.	전국대학영자지 기자연합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 소속 영어 신문사 기자	"
6	2005. 2. 15.	MBC	기자, PD 및 임직원	"
7	2005. 2. 16.	한국언론재단	YTN 수습기자	언론피해 사례 Role Play
8	2005. 2. 17.	MBC	기자, PD 및 임직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9	2005. 2. 22.	CBS	사회부 기자	"
10	2005. 2. 23.	마이데일리	취재기자	"
11	2005. 3. 4.	데일리 서프라이즈	정치부 기자	"
12	2005. 3. 8.	파이낸셜뉴스	취재기자	"
13	2005. 3. 9.	한국언론재단	제일경제, 강릉MBC, 머니투데이 수습기자	언론피해 사례 Role Play
14	2005. 3. 16.	한국아이닷컴	취재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15	2005. 3. 22.	강릉MBC	기자 및 PD	"
16	2005. 3. 24.	미디어오늘	취재기자	"

연번	일 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주 제
17	2005. 4. 4.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18	2005. 4. 7.	뉴스앤조이	기자학교 수강생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19	2005. 4. 13.	이데일리	취재기자	"
20	2005. 4. 14.	헤럴드경제	취재기자	"
21	2005. 4. 20.	한국전력공사	홍보실 직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22	2005. 4. 22	전북민주언론운 동시민연합	모니터 회원	"
23	2005. 4. 27.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
24	2005. 4. 28.	전주MBC	취재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25	2005. 5. 6.	헤럴드미디어	수습기자	"
26	2005. 5. 9.	목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27	2005. 5.11.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
28	2005. 5. 16.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
29	2005. 5. 18.	마이데일리	수습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30	2005. 5. 20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연번	일 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주 제
31	2005. 5. 25.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32	2005. 5. 27.	영산대학교	”	”
33	2005. 5. 31.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	”
34	2005. 6. 3.	프레이션안	취재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35	2005. 6. 7.	전북 지방공무원교육원	연수생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36	2005. 6. 9.	KT	홍보실 직원	”
37	2005. 6. 20.	부산MBC	기자, PD 및 임직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38	2005. 6. 21.	부산MBC	”	”
39	2005. 6. 28.	전국경제인연합회	각 기업 홍보담당 간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40	2005. 7. 22.	서울대학영자신문 기자연합	소속 영어신문사 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41	2005. 7. 25.	헤럴드미디어	수습기자	”
42	2005. 8. 6.	전국대학영자신문 기자연합	소속 영어신문사 기자 ”	”
43	2005. 8. 19.	새전북신문	기자 및 임직원	”
44	2005. 8. 23.	한국언론재단 언론인 기본연수	이데일리, 경기일보, 경남일보, 전남일보 수습기자	”

연번	일 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주 제
45	2005. 9. 6.	민주노동당	민노당 홍보실, 보좌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46	2005. 9. 15.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 특강 수강생	"
47	2005. 9. 15.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	"
48	2005. 10. 4.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원론 수강생	"
49	2005. 10. 5.	전남일보	기자 및 임직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50	2005. 10. 5.	지역인터넷신문	소속사대표	"
51	2005. 10. 6.	전자신문	기자 및 임직원	"
52	2005. 10. 7.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사회와 마스크 수강생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53	2005. 10. 13.	SBS	신입사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54	2005. 10. 19.	부산대학교	언론법제 수강생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55	2005. 10. 21.	여기자협회	소속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56	2005. 11. 2.	KBS	내부 교육용 동영상 촬영	"
57	2005. 11. 7.	한국언론재단 지역기자연수	지역일간신문기자	"
58	2005. 11. 9.	MBC	보도국 기자	"

연번	일 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주제
59	2005. 11. 11.	충북공무원교육원	연수생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60	2005. 11. 11.	오마이뉴스	기자	"
61	2005. 11. 14.	한국언론재단 지역기자연수	지역주간지기자	"
62	2005. 11. 15.	한국언론재단 언론인기본연수	경향신문, 전민일보, 전북일보 수습기자	언론피해사례 Role Play
63	2005. 11. 21.	한국언론재단 언론인기본연수	한겨레, 프레시안 수습기자	"
64	2005. 11. 23.	한국언론재단 지역기자연수	지역신문기자	"
65	2005. 12. 1.	자치인력개발원	연수생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66	2005. 12. 12.	경찰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
67	2005. 12. 14.	한국언론재단 언론인기본연수	문화일보, 뉴시스 수습기자	언론피해사례 Role Play
68	2005. 12. 16.	경남도민일보	기자 및 임직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3. 평가

위원회는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대상별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일반인의 경우 설문
에 응답한 99%가 위원회의 교육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언론인의 경우에도 98%가 위원회의 교육이 향후 취재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인 98%, 언론인은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일반인은 물론 언론인들로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향후 추가 교육 시 참여의사, 교육의 충실도 등에서도 95%에 이르는 인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위원회의 교육이 보도의 주체인 언론인과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언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언론분쟁 사례나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보다 매체 특성과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각 매체 성격과 교육대상에 따라 다른 교육교재와 사례를 준비하여 한층 밀도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위원회의 교육은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언론중재법과 위원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위원회는 일반 개인들에게도 교육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제4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제1절 개요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고 각계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활동이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반론권제도를 비롯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하며, 언론법제 연구의 산실로서 역할해 왔다.

위원회는 국내외 언론관련 판결문이나 외국의 관련 제도 등 언론법제 분야의 상당한 자료를 입수, 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연구문헌을 위원회 발간물 등에 꾸준히 소개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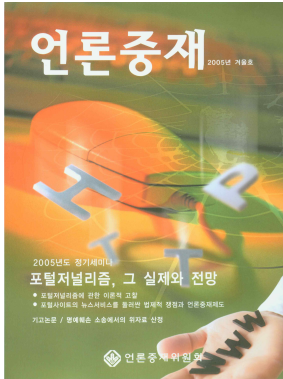
또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언론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위원회의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를 비롯한 언론법제와 관련한 조사연구사업은 다양한 언론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위원회 사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법령,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이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1) 계간 <언론중재> 발간



계간 <언론중재>는 언론과 언론보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특집주제로 선정하여 이를 이론적·법적 측면에서 분석·조망하고, 언론관계 법제 및 언론중재제도 관련 조사연구논문, 국내외 언론관계 판결동향, 조정·중재신청 사례 및 기타 언론 관련 자료 등을 수록하여 연간 4회 발간하였다.

<언론중재>는 2005년 12월 현재 통권97호를 발행했고, 언론사, 대학 및 공공도서관, 시민단체 등과 법조계, 언론계, 학계의 전문가에게 배포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웹진 <언론중재>를 발간,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언론중재>는 언론 및 언론법제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논문 등의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언론중재법 시행과 관련,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 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언론관계 전공자들이 논문이나 전문서적을 출간할 때 <언론중재>를 인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배포처 외 기관이나 개인, 단체 등에서 발송 요청이 이어지는 등, <언론중재>는 언론법제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표 31] 계간 <언론중재> 주요내용

호수	특집	주요 논문	기타 주요 내용
2005년 봄호 (통권 제94호)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I	명예훼손의 법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 향	[통계보고] 2004년도 중재신청처 리 등 주요 업무처리 현황
2005년 여름호 (통권 제95호)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II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 문제	달라진 언론중재제도 와 중재위의 역할
2005년 가을호 (통권 제96호)	언론관계법과 언론 자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 인가	X파일 사건보도를 지켜보며
2005년 겨울호 (통권 제97호)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2) <국내언론관계판결집> 발간

위원회는 언론관련 민·형사소송 판결을 수집하여 그 일부를 <국내언론
관계판결집>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은 언론관련 판
결만을 모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국내 유일의 판례집으로서 법조계 및 학
계, 언론계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05년까지 제12집이 발간된 이 책은 언론관계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 법
원의 판결동향을 살피는데 유용하며, 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업무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반론보도청구사례 6건, 정정
보도청구사례 2건, 손해배상청구사례 25건, 헌법재판소 결정 1건, 기타사례
1건 등 35건의 판결문을 게재하여 1,200부를 발간하였다.

(3) <연차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접수, 처리한 조정신청사건 및 시정권고, 각종 통계 분석을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연차보고서>는 위원회의 피해구제업무 및 상담업무의 참고자료로,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해에는 2004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례, 시정권고 사례, 각종 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여 2005년 3월, 900부를 발간하여 언론계, 법조계, 정계, 학계 등 약 800여 곳에 배포하였다.

(4) <언론조정실무제요> 발간

변화된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운용 기준 및 실무매뉴얼을 담은 <언론조정실무제요>를 발간하였다. 위원회의 주된 업무인 조정 및 중재신청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관련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이 책은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언론조정업무를 통일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한 법령, 정책 등에 관해 사회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관계자가 모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도에도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총 4건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언론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2005년도 위원회 정기 세미나

세미나는 언론분쟁의 한 당사자인 언론사 데스크와 중재위원, 그리고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언론법제와 윤리 관련 현안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언론과 피해구제제도 및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는 장으로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인터넷신문 규정 조항에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인터넷 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구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 포털과 저널리즘 그리고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다양한 법제적 쟁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박3일간에 걸쳐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기세미나에서는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포털 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양삼승 변호사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제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이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송영천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진지한

공방과 논의 끝에 인터넷 언론사를 비롯한 언론사들로부터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조정 및 중재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세미나 주제논문 및 토론내용은 정리되어 종합보고서로 발간되었다.

2005년도 정기세미나는 언론중재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의 운용에 대한 언론사의 직접적인 반응을 살펴보고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미비점, 보완점 등을 점검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언론사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포털에 대한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2) 언론피해구제제도 홍보를 위한 지방토론회

위원회는 언론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언론피해구제제도로서의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매년 지방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대전, 제주, 경남에서 각 1회씩 개최하였다.

[표 32] 2005년도 지방토론회 개최현황

	대전지방토론회	제주지방토론회	경남지방토론회
일시	3. 4.	5. 27.	10. 21.
장소	유성호텔	제주그랜드호텔	호텔인터내셔널
발표자	장호순 위원	김종배 위원	황용경 위원
주제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달라진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참석인원	약 80명	약 80명	약 70명

특히 2005년도에는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달라진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지역언론 및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민들이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역 언론사 관계자 및 지역인사들로부터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 조정실무 개선을 위한 중재위원 워크숍

위원회는 2004년부터 언론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중재위원들이 참여하여 조정·중재법리 및 사례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심리의 질적 향상 도모하기 위해 중재위원 워크숍을 열고 있다.



중재위원 워크숍

중재절차의 변화와 효과적인 운영방안', 송영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효율적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조정·중재법리 및 절차에 관한 토론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상과 심리업무 전반에

2005년에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새 언론중재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달라진 조정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2005년 워크숍은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양삼승 변호사의 ‘중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워크숍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 및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실제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3.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 조사 목적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 언론분쟁 당사자들이 제도 이용시 느꼈던 불편함이나 만족도를 파악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언론중재법에 의해 새롭게 마련된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 운용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언론조정심리에 출석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물론, 언론피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상담신청인 및 위원회가 실시하는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교육 대상자 등 위원회를 이용했던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각 영역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새로 시행된 언론피해구제 제도 및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중재위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2005년 10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하였다. 다만 교육 수강생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중재위원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도 위원회가 행하였다.

전체 조사결과는 <200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로

발간되었다.

(2) 조사결과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위원회 역할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다른 이유를 들고 있으나 양당사자 모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라는 위원회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위원회의 필요성 근거로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언론보도 피해가 재발생할 경우 신청인의 75.2%가 위원회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재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피신청인의 경우 조정심리 참석 후 '이전보다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9.6%로 나타나 위원회의 긍정적 기능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상담신청인의 73.5%는 언론조정절차 안내를 받았고, 19.2%는 법적절차 안내, 7.3%는 타기관, 단체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친절성에 대해서 82.4점, 상담원의 적극성, 전문성에 대해 각각 77.4점, 76.7점으로 평가되는 등 상담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상담신청인들은 다른 상담기관에 비해 위원회 상담창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72.0점,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서는 65.9점으로 평가하여, 다른 상담기관에 비해 위원회 상담 창구가 전문성, 신뢰성, 편리성에 있어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4. 학술자료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위원회 자료실

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국내도서 592권, 해외도서 60권 등 최신자료를 입수하고, 국내외에서 발간된 언론 및 법률관계 서적과 판례집,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언론조정·중재제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충해 왔다. 소장 도서 총 2,000여 권 가운데 언론학 및 법학 관련 도서가 80%에 달하는 1,600여 권에 이른다. 이

소장 도서 및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5년 위원회는 별도의 자료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언론 및 법률관계 전문서적을 다량 확보하고, 열람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료실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직원들과 중재위원은 물론 유관기관 및 일반시민들도 위원회 자료실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자료실 운영은 직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이용자들에게는 전문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대국민서비스 제고에 부응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05년 언론피해구제제도 등 언론법제 관련 논문 및 정보가 다수 실려 있는 <언론중재>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1981년 창간호부터 최근 발행된 <언론중재>에 수록된 언론법제 관련 논문, 국내외 판결례 등 다양한 자료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언론법제를 연

구하는 교수와 학생 등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학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제정의 의미와 법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운용 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연구를 추진하였다.

<언론중재>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특집을 2회 연속 기획,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연차보고서> 등을 보다 내실 있게 구성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 나갔다.

세미나는,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인터넷 언론 가운데 일부가 법적 틀 안에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털 등에 대한 법 제정상의 미비점을 부각시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된다. 한편 3차례 진행된 지방토론회에서는 언론중재법으로 달라진 제도를 소개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이 참석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국한하여 진행되어 온 이용만족도 조사를 개선하여, 2005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물론, 상담신청인 및 교육수강생 등 위원회를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이용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5장 홍보

제1절 개요

위원회는 2005년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TV, 신문 등 기존의 주류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날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인터넷언론과 전광판, 지하철 등 광고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장애인대상 언론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등 홍보계층의 다변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언제든지 신청당사자가 사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검색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이버 홍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국민들에게 새롭게 시행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신규 광고물을 제작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주요 4대 매체 외에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터넷광고를 비롯, 지하철광고, 전광판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집행하였다. 또한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장애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 등 사회적 소수계층인 장애인

을 위한 매체 광고를 5회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방송광고 225회(TV광고 77회, 라디오광고 148회)를 비롯하여 신문광고 116회, 인터넷배너, 전광판, 지하철 광고 같은 기타매체광고 52회 등 총 393회 매체광고를 집행했다.

위원회는 홍보책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와 홍보리플렛 <새로운 언론중재법, 공정한 언론문화를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를 각 7,000부 제작하여, 각 행정기관 민원실, 도서관,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삽화를 곁들여 알기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고 있는 홍보책자는 누구나 흥미롭게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위원회 홍보책자

한편 위원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언론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 관리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한 조정(중재)신청, 시정권고신청

이 가능해짐에 따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온라인신청 프로그램과 사건 검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실시간상담실을 보완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반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사건검색창은 조정신청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건번호, 담당중재부, 사건

접수일, 당사자명, 심리일정, 처리결과 등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사건 진행과정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위원회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웹사이트를 강화하고, 국정감사 결과 및 사업현황 및 예결산 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정보의 공유 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하는 <교과서 보완지도자료>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위원회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 행사 관련 보도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힘썼다. 2005년 동안 중재위원 워크숍, 정기세미나, 토론회, 위원총회 등 위원회가 주관한 행사 관련 보도가 방송,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100여 회 보도되었다.

제3절 평가

2005년도 위원회 홍보는 언론중재법 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를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매체 광고집행이었는데 대해 평가할 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홍보매체의 다변화, 소구계층의 확대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매체 광고집행을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TV·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를 고려하여 매체배분과 일정, 빈도, 기간, 규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

후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언론매체 인터뷰, 기고, 강연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관련 매체 광고를 더욱 늘리고, 점자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홍보에도 관심을 갖는 등 위원회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